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52070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306,407원 및 그중 55,306,209원에 대하여 2021. 7. 22.부터 2021. 8.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7. 23. 체결된 278,193,88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55,306,4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55,306,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보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대출받았다.

[표 1]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1	2018. 3. 6.	D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3. 3. 6.
2	2018. 3. 6.	E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3. 3. 6.
3	2018. 4. 20.	F	5,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19. 4. 19. (2022. 4. 15.까지 연장됨)
4	2020. 3. 12.	G	20,000,000원 보증비율 : 100%	2025. 3. 12.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각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그 후 피고 A이 C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C은행은 2021. 7. 5. 원고에게

2021. 6. 22.자로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21. 7. 22. 피고 A을 대위하여 C은행에 각 대출원리금 합계 55,898,120원을 변제하고, 그중 합계 591,911원을 회수하였다. 원고의 위 각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합계 198원이다.

[표 2]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회수금액(원)	대위변제잔액(원)
1	D	2021. 7. 22.	15,438,233	135,911	15,302,322
2	E	2021. 7. 22.	15,331,509	-	15,331,509
3	F	2021. 7. 22.	5,026,461	45,720	4,980,741
4	G	2021. 7. 22.	20,101,917	410,280	19,691,637
합계			55,898,120	591,911	55,306,209

라. 피고 A은 2021. 6. 7. H, I과 사이에, 피고 A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 I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21. 7. 23.에 지불하며, 잔금 지급시에 매도인이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인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채권최고액 3,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말소하기로 약정함]하고, 2021. 6. 24. H, I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피고 A의 남동생인 N의 배우자이다. 피고 B는 2021. 7.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중 일부인 278,193,8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H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조로 이 사건 금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55,306,407원[= 잔존 대위변제금 55,306,209원(= 대위변제금 합계 55,898,120원 - 회수금 합계 591,911원) + 확정손해금 합계 198원] 및 그중 위 55,306,20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8.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원고의 위 채권 전액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6498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21. 7. 21.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제5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소송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잔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2021. 7. 2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H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 B 및 N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및 N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 및 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잔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 B 및 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발생일은 2021. 7. 22.이고,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날은 2021. 7. 23.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을가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08. 8. 24. O과 사이에, 피고 A이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08. 9. 23.에, 잔금 1억 4,600만 원은 2008. 10. 3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 N 명의의 계좌에서 2008. 8. 24.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 2008. 8. 29.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08. 10. 28.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8. 10. 29. 취득세 명목으로 262만 원, 등록세 명목으로 3,144,000원이 각 출금된 사실, 피고 A이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N이 2008. 11. 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1. 7. 23. 전출한 사실, 피고 A이 2021. 6. 7. H,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 중 2,7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N이 2021. 6. 18. 피고 A의 사회보험료로 4,217,500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같은 날 말소된 사실, 피고 B가 2021. 7. 23. 이 사건 금원 중 2억 7,800만 원을 N에게 다시 입금한 사실,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중 일부로 2021.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L은행에 166,759,545원(수수료 포함), M에 25,046,575원을 각 채무자인 피고 A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L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 A과 피고 B 및 N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차례 대출을 받았고, 특히 L은행은 2016.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A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N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 및 전입세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N의 배우자인 피고 B는 면담조사에서 N이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N의 무상거주확인서까지 작성되었던 점, 피고 A과 H, I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2건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 A이 피고 B 및 N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 잔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H, I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피고 A이 2021. 7. 15.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6498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 A이 2021. 11. 7. 기준으로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은 합계 381,189,830원(C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 내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중 H이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 잔금 4억 7,000만 원에서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채권자인 L은행, M에 각 지급한 대출금(수수료 포함) 합계 191,806,120원(= 166,759,545원 + 25,046,575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A은 2021. 7. 23.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 잔금 중 이 사건 금원 내지 이 사건 금원지급채권은 피고 A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55,306,4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55,306,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